

1. 개정이유

코로나로 인한 승객급감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유가연동보조금 정의(안 제3조)

: 2023년 경제정책방향 <2022. 12. 21.> 추가

나. 유가보조금 지급기간(안 제5조)

: 유가보조금은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(1년 연장)하고,
유가연동보조금은 2023년 1월 1일 ~ 2023년 4월 30일(4개월 연장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2023년 경제정책방향 회의('22.12.21.)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나목 중 “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>”을 “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.>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 <2022. 12. 21.>”로 한다.

제5조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은 “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”으로 하고, 단서 중 “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유가보조금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.	1. ----- -----.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.>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가연동보조금</u>	나. <u>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.>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<2022. 12. 21.> -</u> ----- ----- -----
2. ~ 11. (생 략)	2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유가보조금 지급기간) 유가보조금은 <u>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한시적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제3조제1호 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<u>2022년</u>	제5조(유가보조금 지급기간) --- ----- <u>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</u> ----- -. ----- ----- <u>2023년</u>

<u>5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</u> 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.	<u>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--</u> ----- .
---	--